

경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·정서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센터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제2조(명칭 및 위치) 경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 <개정 2021.10.01.>

제3조(사업) 본 상담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<개정 2020.10.01.>

1. 개인 및 집단상담
2. 심리검사 및 심리검사 해석상담
3. 인권침해,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위기상담
4.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조사연구
5.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6. 심리교육 및 상담역량 강화 교육
7. 인턴 상담원 교육
8. 인성 함양·소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9. 학생지도상담 시스템(All in One) 총괄 운영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) ① 상담센터에는 심리상담소, 인권·양성평등상담소, 대학생활교육개발실을 둔다.

② 상담센터는 센터장, 운영위원, 상담연구원 및 인턴상담원,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상담센터장) ① 센터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며,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상담 소(실)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상담연구원) ① 상담연구원은 상담 및 심리검사, 연구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상담연구원은 상담 또는 임상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인턴상담원) ① 인턴상담원은 상담연구원의 감독 하에 개인 및 집단상담, 심리검사 업무를 보조한다.

② 인턴상담원은 상담 또는 임상관련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센터장이 학기 단위로 선발하며, 업무를 보조한다.

제8조(객원상담원) ① 객원상담원은 상담센터의 상담 또는 기타 사업의 운영을 돕는다.

② 객원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) 상담센터는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위기상담자문위원) 성폭력, 자살, 범죄피해 등 위기 학생들의 신속한 개입과 상담을 위해 위기상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

제11조(업무) ① 상담센터는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부서들의 총괄운영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된다.

② 상담센터는 매년 신입생의식조사·재학생실태조사 등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프로그램을 개발에 반영한다.

③ 전년도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개선안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편성계획을 수립한다.

④ 수립한 편성계획은 학생심리상담위원회를 통해서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운영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0.10.01.>

⑤ 심리상담지원 주관부서로서 운영부서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, 참여자(수료) 명단, 집행예산, 만족도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성과보고 자료를 수합하여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에 제출한다.<개정 2020.10.01.>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13조(운영위원회) ① 상담센터의 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
- 1. 상담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예산안
- 2. 상담센터 운영의 결과 및 결산안
- 3. 상담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
- 4.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5. 기타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장 재 정

제15조(재정) 상담센터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, 참여기관출연금, 교내지원금, 연구보조금(연구용역 간접비 포함)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용역)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계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.

제17조(예산·결산) 상담센터 예산의 편성,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상담센터장이 행한다.

제18조(회계연도) 상담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6장 보 칙

제19조(해산) 상담센터의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외에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03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